



동아대학교 도서관과 부산외국어대학교 중앙도서관간의

상호협력 협약서



1. 동아대학교 도서관과 부산외국어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두 대학 간의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17.4.11.)에 의거, 도서관 간 공동 이용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학술 정보 자료 및 시설을 공동 이용할 것을 협약한다.
2. 도서관 공동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도서관 공동 이용 시행세칙” 과 같이 시행한다.

2017 년 7 월 20 일

동 아 대 학 교
도서관장 최 병 각

부산외국어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김 동 하

최 병 각

金 東 河

대학도서관 공동 이용 시행 세칙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동아대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교 간의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17.4.11.)에 의거 동아대학교 도서관과 부산외국어대학교 중앙도서관 간의 공동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자격)

1. 이용자격은 협약기관 소속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한다.
2. 협약기관의 이용자는 휴학, 자퇴, 졸업 및 수료, 퇴직 등 신분변동이 생길 경우 이용 자격이 상실되며, 협약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

제3조(이용등록 및 확인)

1. 협약기관의 이용자 등록은 이용기관의 절차에 따른다.
2. 타 대학 도서관 이용신청서는 소속 도서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도서관 회원가입신청(개인정보동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자료대출 시 신분 확인은 이용자 소속 대학의 학생증, 신분증으로 한다.
4. 이용기간은 가입한 시점의 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연장 시에는 재신청을 해야 한다.

제4조(이용범위)

1. 자료 이용 : 협약기관이 소장한 자료에 대해 열람, 대출 서비스를 연중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관 상황에 따라 특정자료(희귀본, 특수자료 등)는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도서대출 한도는 대출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2. 열람실 이용 : 협약 기관의 열람실 이용은 해당 대학교에서 정한 기간을 제외한 전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조건)

1. 자료의 대출 및 반납, 제재에 관한 사항은 대출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2. 대출 자료에 대한 책임은 대출일로부터 반납일까지 차용기관이 진다.
3. 대출한 자료가 분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대출기관의 변상도서 처리규정에 따른다.
4. 장기연체자(1개월 이상)에 대한 반납독촉고지서는 차용기관에서 발송한다.

제6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각 협약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효력)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서 서명일로부터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서면통지에 의해 협약을 종료하지 않는 한 지속된다.

제8조(기타)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대학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